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20호서식] <개정 2020. 5. 27.>

(앞쪽)

허가번호 제 호

폐기물 [] 중간처분업 [] 최종처분업 [] 종합처분업 [] 중간재활용업 [] 최종재활용업 [] 종합재활용업 허가증

상호(명칭)		사업자등록번호	
성명(대표자)			
주소(사무실)	(전화번호:)		
전문처리분야			
영업대상 폐기물			
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 소재지	(전화번호:)		
시설·장비			
기술능력			
허용보관량			
허가조건			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

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[] 중간처분업 [] 최종처분업 [] 종합처분업 [] 중간재활용업 [] 최종재활용업 [] 종합재활용업 을 허가합니다.

년 월 일

시·도지사
유역(지방)환경청장 직인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

(뒤쪽)

<적합성확인 사항>

연월일	내용	확인

<변경사항>

연월일	내용	확인

<행정처분사항>

일련번호	연월일	위반내용	연월일	처분내용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